



**CDTFA**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 기록을 열람하고 수정하는 방법



## 개요

다음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에 보존된 기록 중 본인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수정하려는 개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해당 권리는 민법 1798조 정보취급법(Information Practices Act of Civil Code section 1798 et. seq.)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별 요구 사항 및 예외

개인의 이름이나 개인에게 할당된 기타 식별 방식에 따라 기록을 검색할 수 있을 경우 귀하는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유형의 정보를 열람할 권한은 개인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 형법 집행을 위해 보존된 정보.
- 주법의 특정 위반을 조사할 목적으로 조사 및 시정 조치(해당되는 경우)가 완료될 때까지 보존되는 정보.
- 시험이나 검사의 객관성 또는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보.
- 의료, 정신건강 또는 심리 관련 정보(기록 보존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해당 정보 공개 시 개인에게 의학적 또는 심리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할 경우).
- 법률에 따라 관련 개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된 모든 정보.
- 타인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를 얻은 출처의 이름(기밀 유지가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 기록 열람 요청

CDTFA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다양한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 보존 여부를 부서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하십시오.

당국에서 기록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귀하의 성함, CDTFA 계좌 번호 또는 관련 부서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기록을 식별하고 찾거나, 기록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 주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 이메일:

[Disclosure.Office@cdtfa.ca.gov](mailto:Disclosure.Office@cdtfa.ca.gov)

### 우편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Disclosure Office, MIC:82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82

### 팩스

1-916-324-5995

## 기록 열람

본인 기록을 열람할 법적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용 가능한 기록에 대한 열람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또는 기록이 보관 시설에 있거나 지리적으로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부당한 지연 없이 정보를 이용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열람을 위해 귀하에게 기록이 제공되기 전 귀하는 적절한 신분 증명서(운전 면허증, 신분증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록을 열람하는 동안 귀하는 개인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설정되지 않는 한 복사 비용은 장당 10센트 (\$0.10)입니다. 다른 형식의 기록 사본의 경우, 사본 제작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요금이 부과됩니다.

## 기록의 열람 요청 거부

기록의 내용 공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기록 열람 요청이 거부된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기재된 서신의 사본과 함께 공개 담당자에게 검토 요청을 보내주십시오. 요청이 수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기록 수정 요청

귀하의 신분이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의 개인정보가 정확성, 적절성, 적시성, 완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기록 수정 또는 정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보존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요청을 제기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 정보가 포함된 기록의 유형.
- 기록의 주체인 개인의 이름.
- 요청된 수정 또는 정정의 자세한 내용.
- 해당 기록에 수정 또는 정정이 필요한 이유.

요청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CDTFA 팀 구성원이 요청에 따라 수정 또는 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요청의 전체 또는 일부가 거부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록의 수정 또는 정정을 거부하는 사유도 제공됩니다.

## 기관 검토

기록의 일부 수정 거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록 검사 요청(Requests to Inspect Records)” 섹션에 표시된 주소로 공개 담당자에게 검토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요청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록 수정 또는 정정 요청의 원본 사본
- 기록 수정을 거부하는 부서 공무원의 사유 및 요청 거부 통지서 사본
- 귀하께서 해당 거부 결정에 반대하는 사유 및 요청의 근거가 되는 추가 정보

## 반대 성명서 제출

부서에서 검토 후 수정 또는 정정 요청의 전체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거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통지문에 포함됩니다. 부서의 검토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반대 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명서는 요청된 정정 사항 및 각 정정이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는 적절한 길이(일반적으로 1-3페이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반대 성명서는 기록 보존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보내주십시오.

귀하의 반대 성명서는 CDTFA의 기록 수정 거부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록의 일부를 구성하며, 분쟁 대상인 정보가 공개되는 개인 또는 기관에 해당 기록의 사본이 제공됩니다.

## 추가 정보

[www.cdtfa.ca.gov](http://www.cdtfa.ca.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 서비스 센터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은 주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 사이에 근무합니다. 영어 외 다른 언어로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1-800-400-7115(CRS:711)(캘리포니아주에서 전화할 경우)

1-916-324-2926 (CRS:711)(타주에서 전화할 경우)

간행물 58-A-K | 2020년 5월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

우편 주소: P.O. BOX 942879 • SACRAMENTO, CA 94279-0001